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29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윤종오 · 한준호 · 전종덕
손 솔 · 황운하 · 김재원
허성무 · 김현정 · 김종민
정혜경 · 김준형 · 임미애
한창민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노동자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고용보험상 보호의 제도적 단절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화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 노동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업에 따른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임.

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보험료)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u>65세</u> 이후에 고용(<u>65세</u>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u>65세</u>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④ ~ ⑥ (생략)</p>	<p>법률 제214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보험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70세</u>-----<u>70세</u>----- ----- <u>70세</u>----- ----- ----- ----- -----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